

# 2018년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7년 10월 24일  
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 / 강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10. 16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징수과장 이용우)

###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“한국지방세연구원”에 14,912천원을 출연하고자 함

### 주요내용

-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
- 출연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금액 : 금14,912천원(전년 대비 968천원 증가)
- 산출기초 :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9,416,848천원의 1만분의 1.5
- 출연시기 및 방법: 2018. 3월중 현금출연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지방재정법 제18조, 지방세기본법 제152조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

나. 예산조치 : 14,912천원

다. 기 타

- 우리 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별	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
출연금	67,484	13,944	12,627	11,488	11,091	10,990	7,344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-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  
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
  -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,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,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- 본 출연액 1,491만 2천원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94억 1,684만 8천원의 1만분의 1.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,

※ 2018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

(단위: 천원)

① '16년 결산 지방세	'16년 결산 보통세			⑤ '18년 연구원 출연금
	② 소계(a+ b)	③ 현년도(a)	④ 과년도(b)	
99,416,848	99,416,848	98,831,452	585,396	14,912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①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

**□ 지방재정법**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**제17조제2항**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**□ 지방세기본법**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**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**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

-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## 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7.7.26.] [대통령령 제28211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